

#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의 解釋原則\*

韓 圭 植\*\*

- 
- I. 序 論
  - II. CISG의 解釋原則
  - III. CISG 適用에 따른 賣買契約의 解釋原則
  - IV. 結 論
- 

## I. 序 論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협약’ 또는 ‘CISG’라 한다)은 國內 契約法에서 總則에 해당하는 두 가지 一般條項을 두고 있다. 그 하나는 CISG 자체의 解釋原則이며, 다른 하나는 契約의 解釋原則이다. CISG 자체의 解釋原則은 CISG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法院 등 객관적인 제 3 자가 國際賣買에 적용하는 一般解釋原則이다. 契約의 解釋原則은 CISG 제 8 조에 의한 것으로 매매당사자의 陳述이나 行爲를 해석하는 데에 기준을 제공하는 契約解釋原則이다. CISG가 法律의 一般解釋原則에 더해서 이러한 契約解釋原則을 別個條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계약에 사용된 言語에 대한 解釋이 모호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나름대로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

\* 本 論文은 1997 年 韓國學術振興財團의 公募課題 研究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釜山經商大學 貿易科 助教授.

1) Gyula Eörsi, “General Provisions”,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ina M. Galston & Hans Smit eds., Matthew Bender, 1984, pp.2~3; 이 점에 대하여 특히 UNIDROIT 原則 § 4.7에 契約이 동등한 權限을 가진 여러 言語로 작성되고 이들 언어 사이에 解釋의 差異가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이 최초로 작성된 言語에 따른 解釋이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에 異種言語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國際商事契約에 관한 UNIDROIT 原則(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1994): 이하 'UNIDROIT 原則'이라 한다)에도 제1장 總則에서 본 원칙의 解釋 및 補完(본 원칙 1.6), 그리고 信義誠實 및 公正去來(본 원칙 1.7)로 나누어 CISG 자체의 解釋原則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관점에서 UNIDROIT 原則 자체의 解釋基準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원칙은 제4장 契約의 解釋(본 원칙 4.1~4.8)에서 賣買契約의 解釋原則에 대하여 CISG보다 더욱 상세히 다루고 있다. 즉 CISG가 단지 當事者一方의 陳述 및 行爲의 解釋(본 원칙 4.1~4.3에 해당)만을 규정한 것에 비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보완하고 있다.

CISG는 國際物品賣買에서 각국의 상이한 法規로 인하여 발생하는 法的 不確實性을 감소하고자 제정된 國際統一賣買法이다. 따라서 CISG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契約法에서 자국의 法律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는 달리 CISG를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고유의 原則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CISG의 解釋原則과 契約의 解釋原則을 제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UNIDROIT 原則은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서 CISG와 같은 國際統一法을 해석하고 보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며, CISG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解釋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ISG의 解釋原則과 그 적용에 따른 賣買契約의 解釋原則에 관하여 그 必要性和 活用方案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있는 UNIDROIT 原則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CISG의 解釋原則

CISG를 해석할 때 CISG 解釋의 주요한 요소인 國際的 性格, 그 適用의 統一性, 그리고 信義誠實의 遵守를 고려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본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본 협약이 근거하고 있는 一般原則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한 原則이 없는 경우에는 國際私法에 의해 적용되는 法律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제7조 제2항). 이러한 解釋原則은 CISG의 초안자들이 의도하였던 세 가지

주요한 目標을 달성하게 한다.<sup>2)</sup> 첫째, 國際賣買에 그 適用의 統一性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國際私法에 의해 準據法을 결정하여야 하는 頻度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法廷地 選擇(forum shopping)에 관한 문제에 부딪히는 빈도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CISG의 解釋에 중요한 점은 國際貿易에 흔히 발생하는 自國法適用 傾向(homeward trend)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각국이 自國法을 우선 적용하려는 경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CISG를 해석할 때 國際的 性格과 統一性 增進을 고려하여야 하며 CISG가 근거하고 있는 一般原則에 따라야 한다.

### 1. 國際的 性格 및 適用의 統一性

CISG의 國際的 性格 및 그 適用의 統一性 增進은 CISG를 해석하는 가장 基本的 基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CISG를 해석하는 이러한 基準은 個別條項이 지니는 意味와 法律效果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인 동시에<sup>3)</sup> CISG 규정의 普遍的인 使用을 뒷받침한다. 普遍性은 CISG의 원동력인 동시에 核心的 特性이다. UNIDROIT 原則에서도 CISG와 유사한 解釋原則을 정하고 있다. 즉, 본 원칙을 해석할 때 國際的 性格, 그리고 適用의 統一性 增進을 위한 必要性을 포함한 본 원칙의 目的을 고려하여야 한다.<sup>4)</sup>

CISG의 解釋基準으로 國際的 性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각국의 國內法을 해석하는 傳統的 技法 및 原則에 의존하여 CISG를 해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ISG는 國際的 觀點으로 준비되고, 합의되어, 제정된 法律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國際統一法에 가입하여 그것에 의해 규율된다고 할지라도 自國의 法律構造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CISG를 해석할 때 國際的 性格을 고려하여 CISG 자체적으로 그 要件과 用語를 해석하여야 한다. 즉, 특정한 國內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方法으로가 아니라 CISG 그 자체의 문

2) UNCITRAL, *Commentary on the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U.N. Doc. A/CONF.97/5, reprinted in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Doc. A/CONF.97/19.

3) M.J. Bonell, “Interpretation of Convention”,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è, Milan, 1987, p. 72.

4) UNIDROIT 原則 1.7(1).

맥으로써 해석하여야 한다.<sup>5)</sup>

CISG 適用의 統一性を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法院과 仲裁院은 타국의 法院 및 仲裁院이 CISG를 적용하여 내린 判決 및 判定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方案이 1988년 UNCITRAL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그 결과 締約국은 CISG가 적용된 判決文을 UNCITRAL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결정되었다. UNCITRAL에서는 이 判例들을 모아 공표하고 있다.<sup>6)</sup>

## 2. 信義誠實의 遵守

CISG를 제정하는 동안 각국의 대표들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大陸法界 國家의 대표들은 채택을 주장한 반면, 英大法界 國家의 대표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오랜 논의 결과 CISG의 解釋原則에 “國際貿易에 信義誠實의 遵守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條項을 포함하였다.<sup>7)</sup>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첫째 CISG의 解釋을 다루는 條項에 이러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信義誠實의 遵守가 ‘國際貿易에’라는 용어의 추가 때문에 信義誠實의 適用範圍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sup>8)</sup>

우선 CISG의 解釋原則이 “國際貿易에 信義誠實의 遵守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협의의 해석으로 이 조항 자체만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國際貿易에서 당사자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광의의 해석으로 연관하는 모든 CISG 規定에 信義誠實의 原則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견해가 선호되고 있다. 왜냐하면 CISG에는 특별히

5) M.J. Bonell, *op. cit.*, p. 74.

6)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nd ed.,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Deventer, Boston, 1991, p. 145.

7) 英大法界 國家의 대표들은 信義誠實의 條項을 CISG의 解釋條項에 포함하여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점을 Farnsworth 교수는 ‘政治人 같은 妥協’이라는 표현까지 하였다. E.A. Farnsworth, “Problems of the Unification of Sales Law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mmon Law Countries”, *Problems of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80, p. 3.

8) M.J. Bonell, *op. cit.*, pp. 84~86.

信義誠實의 原則이 적용된 많은 條項을 두고 있고,<sup>9)</sup> 따라서 信義誠實은 CISG가 전체적인 法律關係를 해석하는 一般原則의 하나라 보기 때문이다.

다음은 CISG가 ‘國際貿易에’ 信義誠實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國內法이 채택하는 통상의 基準에 의하여 信義誠實의 原則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CISG의 문맥으로 보아 國際貿易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信義誠實의 原則을 해석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先進工業國의 매도인이 開發途上國의 매수인과 賣買契約을 체결할 때 先進國의 매도인은 開途國의 매수인에 비해 經濟的 優位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契約條件을 開途國의 매수인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國際貿易에서 信義誠實의 原則 遵守와 상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요컨대, CISG를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信義誠實의 遵守라는 개념은 당사자가 公正去來와 信義誠實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는 原則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信義誠實의 遵守라는 原則은 CISG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一般解釋原則으로 채택되었다.

UNIDROIT 原則에도 “각 당사자는 國際貿易에 信義誠實과 公正去來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sup>10)</sup> CISG와 유사하게 信義誠實 原則의 遵守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서 “당사자는 이러한 信義誠實과 公正去來의 遵守義務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sup>11)</sup> 信義誠實과 公正去來의 遵守는 當事者自治의 原則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信義誠實과 公正去來의 遵守에 관한 직·간접적용과 관련하는 많은 조항이 있다.<sup>12)</sup>

### 3. 補充法의 援用

아무리 훌륭한 制定法일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CISG와 같은 國際法은 보완이나 개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9) CISG 제 16조 제 2항 b호, 제 21조 제 2항, 제 29조 제 2항, 제 37조와 제 48조, 제 40조, 제 49조 제 2항, 제 64조 제 2항과 제 82조, 및 제 85조~제 88조 참조.

10) UNIDROIT 原則 1.7(1).

11) UNIDROIT 原則 1.7(2).

12) UNIDROIT 原則 2.4(2)(b), 2.15, 2.18, 2.20, 3.5, 3.8, 3.10, 4.1(2), 4.2(2), 4.6, 4.8, 5.2, 6.1.3, 6.1.5, 6.1.16(2), 6.1.17(1), 6.2.3(3)~(4), 7.1.2, 7.1.6, 7.1.7, 7.2.2(b)~(c), 7.4.8 및 7.4.13 참조.

국제무역의 수많은 去來와 條件을 전부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CISG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써 CISG에서 明示的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CISG가 근거하고 있는 一般原則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또는 그러한 原則이 없는 경우에는 國際私法에 의하여 적용되는 法律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7조 제 2항). 이 조항의 制定目的은 法院이 가능한 한 國內法에 의존하는 것을 억제하고 CISG 자체 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13)</sup> CISG는 적용가능한 原則이 없을 경우에만 國際私法에 의하여 國內法에 호소하도록 授權하고 있다. 이것을 法 適用의 공백을 메우는 補充法(gap-filling law)이라고 한다.

UNIDROIT 原則에도 “본 원칙의 適用範圍에 해당하나 본 원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가능한 한 본 원칙에 근거한 一般原則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sup>14)</sup> 國內 强行法規를 제외하고 본 원칙 내에서 問題解決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CISG가 補充法이 필요한 경우는, 첫째 당해 문제가 CISG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둘째 그 문제가 CISG에서 明示的으로 해결될 수 없어야 한다.<sup>15)</sup> CISG에 補充法이 될 수 있는 첫번째 要件인 어떠한 문제가 CISG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지는 CISG에 의하여 배제되는 問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CISG에 의하여 明示的으로 배제되는 문제는 去來의 形態(제 2조), 서비스의 供給(제 3조 제 2항), 契約의 有效性(제 4조 a호), 所有權移轉의 效果(제 4조 b호) 및 製造物責任(제 5조) 등이 있다. 반면에 CISG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문제라도 CISG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도 있다. 그 일례로 CISG는 利子支給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sup>16)</sup> 그 利子率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CISG가 규율하지 아니하는 문제는 자연히 國內法이 규율한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CISG에서 補充法이 될 수 있는 두번째 要件은 당해 문제가 CISG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야 한다. 즉 CISG에 해당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

13) M.J. Bonell, *op. cit.*, p. 75.

14) UNIDROIT 原則 1.6(2).

15) M.J. Bonell, *op. cit.*, pp. 75~76.

16) CISG 제 78조 및 제 84조 참조.

17) G. Eörsi, *op. cit.*, pp. 2~10, 11.

는 明示的 條項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CISG가 적용되면 CISG에 그 문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한 한 CISG 내에서 解答을 찾아야 한다. CISG 내에서 解答을 찾는 方法으로 CISG는 제 7조 제 2항에 의해 두 가지 方法을 허용하고 있다.

그 첫번째는 CISG의 一般原則에 의한 方法이다. 즉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써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CISG가 기초를 두고 있는 一般原則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특정 조항의 類推解釋에 의한 方法이다. 즉 CISG에 당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一般原則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 조항의 類推解釋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sup>18)</sup> 따라서 제 7조 제 2항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一般原則뿐만 아니라 특정 규정의 類推解釋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方法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이 두 方法은 CISG에 때로는 서로 보완적으로 적용되며 때로는 서로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當事者自治의 原則에 의해 제 7조 제 2항의 效果를 감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 7조 제 2항이 契約의 解釋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CISG 자체의 解釋에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契約으로 이 條項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CISG 적용의 統一性 增進을 저해할 수 있다.<sup>19)</sup> CISG의 國際的 性格과 그 適用의 統一性 增進을 고려하는 것은 補充法의 範圍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當事者自治의 原則에 의해 제 7조 제 2항의 效果를 감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sup>20)</sup>

#### (1) 類推解釋에 의한 CISG의 適用

어떤 문제가 CISG에 의하여 明示的으로 해결될 수 없을지라도 그 문제와 관련한 條項을 類推解釋을 통하여 CISG의 적용이 가능하다.<sup>21)</sup> 예를 들어 CISG는 매수인의 代金支給場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

18) M.J. Bonell, *op. cit.*, p. 78.

19) Aleksandar Goldštajn, "Usages of Trade and Other Autonomous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 to the UN(1980) Sales Conventi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brovnik Lectures, Petar Šarčević & Paul Volken eds., Oceana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6, p. 100.

20) M.J. Bonell, *op. cit.*, p. 72.

21) *Ibid.*, pp. 79~80.

이 代金を 다른 특정 場所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a) 매도인의 營業所, 또는 (b) 代金支給이 物品 또는 書類交付와 相換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되는 場所에서 매도인에게 代金を 지급하여야 한다(제 57 조 제 1 항). 그러면 매도인이 契約解除를 선언한 후 이미 받은 代金を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의 대금반환장소가 어느 곳인지 이 規定으로 미루어 보아 명확하지 아니하다. CISG는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지만 명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인의 代金支給場所는 代金支給이라는 매수인의 義務와 관련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代金支給은 통상 매도인의 營業所에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 57 조 제 1 항 a 호). 그러므로 매도인이 契約을 해제한 후 매수인에게 그 代金を 반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代金を 지급하는 方法과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 57 조 제 1 항 a 호에 의해 매도인이 매수인의 營業所에서 代金を 반환하여야 한다고 유추해석하는 것이 論理的이라 생각된다.

매수인이 이미 수령한 物品을 다시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양당사자가 각각 그들의 義務를 이행하여야 하므로(제 81 조 제 2 항), 제 57 조 제 1 항 a 호는 적용될 수 없고 그 대신 제 57 조 제 1 항 b 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이미 수령한 物品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場所가 매수인의 營業所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營業所에서 代金を 상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한편 어떤 條項(A)이 특정 條項(B)과 관련이 있게 보일지라도 그 條項(A)은 그 나름대로 특별한 狀況에 제한되어 특정 條項(B)과 다른 性格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條項(A)이 추구하는 目的이 條項(B)이 추구하는 目的과 다르다.<sup>22)</sup> 이것과 관련한 예를 들어보자.

CISG에 매수인이 契約을 해제할 수 있는 두 가지 要件이 있다. 즉, 契約 또는 CISG에 따른 매도인의 어떠한 義務不履行이 契約의 根本的인 違反에 상당하는 경우(제 49 조 제 1 항 a 호), 또는 引渡不履行의 경우 매도인이 제 47 조 제 1 항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追加期間에 物品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그 지정된 기간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경우이다(제

22) *Ibid.*, pp. 76~77.



49조 제1항 b호). 제4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도인이 義務履行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만큼 追加期間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引渡義務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지정한 追加期間內에 物品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였다면, 매도인의 引渡不履行이 契約의 根本的인 違反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매수인은 契約解除를 선언할 수 있다.

(2) 一般原則에 의한 CISG의 適用

이는 어떤 문제가 CISG에 의하여 明示的으로 해결될 수 없을지라도 CISG가 기초를 두고 있는 一般原則에 따라 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補充法으로써 一般原則에 의해 CISG를 적용하는 方法은 類推解釋으로 CISG를 적용하는 것과 다르다. 즉, 類推解釋에 의한 方法은 특정한 조항을 단순히 협의의 의미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一般原則에 의한 方法은 CISG가 기초를 두고 있는 原則의 一般性에 따르므로 더욱 廣의의 의미로 적용된다.<sup>23)</sup>

一般原則이 CISG에 明示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信義誠實의 原則(제7조 제1항), 當事者自治의 原則(제6조), 不要式의 原則(제11조 및 제29조 제1항), 到達主義의 原則(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항), 發信主義의 原則(제27조), 그리고 遲延金額에 대한 利子支給의 原則(제78조) 등이 이러한 原則이다.

그러나 그 외의 原則은 특정한 문제를 규정한 각각의 條項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CISG가 설정한 一般原則은 여러 條項에 적용될 수 있다. 첫째, CISG는 당사자를 ‘합리적인 자’로 보고 있다.<sup>24)</sup> 특정한 行爲는 合理的인 期間內에 이행되어야 하며 通知 또한 合理的인 期間內에 하여야 한다.<sup>25)</sup>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불편 등을 비합리적인 것과 구별하고 있다.<sup>26)</sup> 즉, CISG에서 ‘합리적인 자’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특정한 規定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行爲를 평가하는 一般的 基準이 된다. 둘째, 당사자는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範圍

23) M.J. Bonell, *op. cit.*, p. 80.

24) CISG 제8조 제2항과 제3항, 제25조, 제35조 제1항 b호, 제60조, 제72조 제2항,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1항, 제85조, 제86조, 제88조 제2항 참조.

25) CISG 제18조 제2항, 제33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3조 제2항 참조.

26) CISG 제34조, 제37조, 제48조, 제87조, 제88조 제2항과 제3항 참조.

까지 어떤 規定의 援用을 배제할 수 있다.<sup>27)</sup> 셋째,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善意契約(favor contractus)을 하여야 한다.<sup>28)</sup> 넷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契約義務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까지 협조할 義務가 있다.<sup>29)</sup> 다섯째, 契約違反 條項을 원용하는 당사자 일방은 契約違反에서 초래하는 損害를 경감하는 合理的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sup>30)</sup>

CISG는 그것이 '기초를 두고 있는 一般原則에 따라' 새로운 問題를 해결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 Honnold 교수는 이러한 一般原則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31)</sup> 첫째, 相對方의 行爲에 의존한 당사자의 보호이다. 둘째,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셋째, 損害를 경감할 義務이다. 그러나 그는 一般原則을 꼭 이렇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CISG에서 말하는 一般原則이란 CISG가 근거하고 있는 原則을 의미하므로 특정 사항이 一般原則이 되는지는 學者에 따라 見解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一般原則이 될 수 있는 事項도 있을 수 있다.

한편 UNIDROIT 原則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1.6(2)). 본 원칙에 명시된 기본적인 一般原則은 契約自由의 原則(1.1, 1.3 및 1.5) 그리고 信義誠實과 公正 去來의 原則(1.7) 등이 있으며 다른 원칙들도 개별조항에서 추출할 수 있다.<sup>32)</sup>

### III. CISG 適用에 따른 賣買契約의 解釋原則

CISG는 當事者의 陳述 또는 行爲에 관한 解釋原則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契約의 解釋原則은 세 가지 接近方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대방은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意圖에 따라 해

27) CISG 제 16 조 제 2 항 b 호, 제 29 조 제 2 항 참조.

28) CISG 제 19 조 제 2 항, 제 25 조~제 26 조, 제 34 조, 제 37 조, 제 48 조, 제 49 조, 제 51 조 제 1 항, 제 64 조, 제 71 조~제 72 조 참조.

29) CISG 제 32 조 제 3 항, 제 48 조 제 2 항, 제 60 조 a 호, 제 65 조 참조.

30) CISG 제 77 조, 제 85 조~제 88 조 참조.

31) J.O. Honnold, *op. cit.*, pp. 99~102.

32) UNIDROIT 原則 1.6 論評.

석하여야 하는 主觀的 接近方法이다. 둘째, 相對方과 같은 정도로 合理的인 者가 가졌어야 하는 理解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 客觀的 接近方法이다. 셋째, 當事者의 意圖 또는 合理的인 者가 가질 수 있는 理解力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체의 相關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周邊狀況에 따른 接近方法이다.

契約의 解釋原則을 CISG의 總則에 포함한 이유는 어떤 契約이 성립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陳述이나 行爲의 解釋뿐 아니라 契約 全般의 解釋을 규율하기 위해서이다.<sup>33)</sup> UNIDROIT 原則은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 제4장에는 CISG와 같이 主觀的 解釋方法(본 원칙 4.1)과 客觀的 解釋方法(본 원칙 4.2)을 두고 객관적 해석의 고려요인인 ‘關聯 狀況’(relevant circumstances)을 (a) 당사자의 예비협상, (b) 당사자간에 확립된 慣行, (c) 계약성립 후 當事者의 行爲, (d) 契約의 性質 및 目的, (e) 당해거래의 조건 및 의사표시에 공통으로 주는 意味, (f) 去來慣習 등 6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본 원칙 4.3). 이 외에도 契約 또는 陳述 全般에 대한 참고(본 원칙 4.4), 모든 契約條件에 效力賦與(본 원칙 4.5), 文書作成者 不利益의 原則(Contra Proferentem Rule: 본 원칙 4.6), 다른 言語의 解釋(본 원칙 4.7), 누락된 條件의 補充(본 원칙 4.8) 등으로 세분하여 계약의 해석에 관한 여러 조항을 두어 CISG의 補充法的 機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國內法의 解釋原則은 CISG에 명시하고 있는 契約의 解釋原則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이 경우는 CISG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으로 보아 CISG가 적용되는지 또는 國內法의 解釋原則을 契約의 有效性에 관한 문제로 보아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論難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CISG가 적용되는 경우 CISG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國內法이 아닌 CISG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즉 CISG에 규정되어 있는 契約의 解釋原則과 國內法의 解釋原則이 충돌할 때 契約의 解釋에 대한 CISG의 규정이 國內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 1. 主觀的 接近方法

CISG를 적용할 때 당사자 일방(A)의 陳述 및 기타의 行爲는 상대방(B)이

33) UNCITR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Eleventh Session*, YB IX, U.N. Doc. A/33/77, 1978.

當事者の意圖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意圖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제8조 제1항). 이 조항은 當事者一方의 陳述 및 行爲는 그意圖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主觀的 解釋方法이라 한다.

어떤 契約의 解釋은 말하는 사람의意圖에 따른다. 다만 相對方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A는 B가 자신의意圖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을 立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請約者(A)가 청약할 때 그가 주장한 의미를 실제로 포함하였고 被請約者(B)가 그러한 內容을 포함한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事實을 입증하는 경우 A의意圖가 인정된다. 그러나 A의意圖를 B가 알고 있었을지라도 A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主觀的인 解釋原則은 실제로 잘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解釋原則은 契約의 內容에 대한 解釋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sup>34)</sup> 契約締結을 위하여 協商中인 당사자의 陳述이나 다른 行爲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請約, 承諾, 請約의 取消, 請約의 拒絕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當事者の 權利가 그러한 行爲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契約締結後의 陳述과 行爲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契約의 變更 및 終了, 物品이 부적합하다는 通知, 契約의 解除 등의 問題를 해석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解釋原則에 의거하여 만약 당사자가 다른 言語 또는 行爲를 상대방과 똑같이 이해하였다면 이러한 理解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는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실제 物品代金이 \$100,000임에도 불구하고 仲介費用을 줄이고자 매수인에게 \$50,000로 契約書에 기재하도록 合意하였다면, 그 物品代金은 그들의 共通的인 理解에 따라 \$50,000이 아닌 \$100,000로 해석된다.<sup>35)</sup>

## 2. 客觀的 接近方法

前項의 規定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當事者一方의 陳述 및 기타의 行爲

34) E.A. Farnsworth, "Interpretation of Contract",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è, Milan, 1987, pp. 97~98.

35) UNCITRAL, *op. cit.*

는 相對方과 같은 정도로 合理的인 者가 동일한 事에서 가졌어야 하는 理解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當事者一方의 陳述 및 行爲는 合理性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客觀的 解釋方法이라고 한다.

만일 請約者가 자신의 意圖가 被請約者와 같은 정도로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事에서 가졌어야 하는 理解라고 입증하는 경우 그 請約者의 意圖가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被請約者가 請約을 승낙하였을 때 被請約者는 請約者와 같은 정도로 합리적인 자와 동일한 事에서 자신과 같이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立證함으로써 被請約者의 意圖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接近方法의 效果는 상대방과 같은 事에서 合理的인 解釋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36)</sup>

제2항의 ‘합리적인 자’의 基準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法院은 당사자가 사용하는 言語의 背景(linguistic background) 또는 語法과 같은 事에 대해 상대방과 같은 정도의 합리적인 자라고 가정할 것이다. 또한 法院은 ‘합리적인 자’를 당사자의 去來와 交涉에 관한 지식, 그리고 世界市場과 당해 事에 관하여 상대방과 동일한 狀況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합리적인 자가 이해한 내용이 아니면 그것에 구속되지 아니한다.<sup>37)</sup>

본 조항은 당사자 일방의 合理的인 期待가 상대방에게서 보호받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CISG에 규정되어 있는 契約의 解釋原則은 별 의미 없는 듯한 형식적인 조항이 相對方의 權利를 교묘하게 침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賣渡確約書의 裏面에 “매도인은 본 確約書에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 외에 物品 適合性에 관한 다른 어떠한 義務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인쇄하였다. 이 경우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러한 物品의 일반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의 입장에 있는 合理的인 사람은 救濟方案이 없다고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契約은 ‘관련한 모든 狀況’에 대하여 신중하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解釋은 신속하고도 반복적인 거래에서 당사자 일방이 제공한 인쇄된 樣式의 注文書에까지 그 適用範圍를 포함하여야 한다.<sup>38)</sup>

36) E.A. Farnsworth, *op. cit.*, p. 99.

37) *Ibid.* p. 99.

38) J.O. Honnold, *op. cit.*, pp. 314~315.

### 3. 周邊狀況에 따른 接近方法

當事者の 意圖 또는 合理的인 者가 가졌어야 하는 理解를 결정할 때에는 交渉, 당사자 사이에 확립되어 있는 慣行, 慣習 및 當事者の 後續行爲를 포함한 그 賣買의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이 조항은 당사자가 賣買에 관련된 모든 周邊狀況을 고려하여 契約을 해석하여야 하므로 周邊狀況에 따른 接近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接近方法은 主觀的 接近方法, 客觀的 接近方法과는 달리 當事者雙方의 合意를 구체화한 陳述에 적용되는 解釋原則을 제시하고 있다.<sup>39)</sup> UNIDROIT 原則에는 當事者の 意圖 또는 合理的인 者가 가졌어야 하는 理解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관련된 모든 상황에는 CISG가 규정하고 있는 交渉, 當事者 사이에 확립되어 있는 慣行, 慣習, 및 當事者の 後續行爲에 추가하여 契約의 性格과 目的 및 해당 거래의 用語와 表現에 공통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원칙에서는 당사자간의 交渉을 당사자간의 事前交渉, 그리고 당사자의 後續行爲도 契約成立에 후속하는 당사자의 行爲라고 표현하여 CISG보다 그 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있다.<sup>40)</sup>

이 접근방법에 따른 解釋原則은 UCC에 나오는 口頭證據排除原則(parol evidence rule)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sup>41)</sup> 口頭證據排除原則이란 文面에 명백한 서류의 내용을 書類作成前에 이루어진 확인할 수 없는 口頭合意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의 최종표현으로써 그들이 의도한 현재 또는 후속하는 文書와 달리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쓰인다. 또한 이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한 條件을 문서화한 것은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陳述이므로 이와 연관한 이전의 合意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CISG에서는 口頭證據排除原則을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契約의 解

39) J.O. Honnold, *op. cit.*, pp. 170~171.

40) UNIDROIT 原則 4.3.

41) UCC 제 2 편 제 202 조: 당사자가 確認覺書에 합의한 契約條件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최종표시으로써 의도한 書面에 기재된 契約條件은 事前에 합의한 證據나 당시의 口頭合意의 證據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고 다음 각호에 의해서 설명되거나 보완된다. (1) 協商科程이나 去來慣行 또는 履行過程; 그리고 (2) 法院 또한 그 書面이 契約條件에 대한 완벽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의도하였음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순되지 않는 追加條件의 證據.

釋에 관련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口頭證據排除原則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契約의 解釋에 融通性을 부여한 것은 口頭證據排除原則이 現代의 商去來에 障礙要因이 된다는 다수의 견해를 받아들인 결과라 볼 수 있다.<sup>42)</sup> 그러나 統合約款(integration clause), 즉 事前의 合意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書面契約條件은 CISG가 기초를 두고 있는 當事者自治의 原則(제6조)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 IV. 結 論

CISG는 國際統一賣買法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法規範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解釋基準이 필요하다. 그 解釋原則으로써 CISG의 國際의 性格, 適用의 統一性 增進 및 信義誠實의 遵守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CISG가 명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CISG가 근거하고 있는 一般原則에 따르고, 그러한 一般原則이 없는 경우에만 國際私法의 規則에 의해 각국의 國內法에 맡기고 있다. CISG의 解釋原則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결국 國際賣買에서 각국의 國內法 適用을 최소화하고 CISG 適用을 증대하려는 方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떤 賣買契約이 CISG에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가 진술한 內容과 行爲에 대한 解釋原則을 상대방의 주관적 의도에 따르는 主觀的 接近方法, 상대방과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客觀的 接近方法, 및 상대방의 意圖와 합리적인 理解는 相關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周邊狀況에 따른 接近方法을 契約의 解釋原則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CISG에서는 契約의 解釋原則을 명시하여 契約의 成立과 履行過程에서 매매당사자의 진술이나 행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

---

42) Harry M. Flechtner,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The Perspective from Article 2 of the U.C.C.," *The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8, 1988, pp. 154~169.

### 參 考 文 獻

- Bonell, M.J., "Interpretation of Convention",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 Eörsi, Gyula, "General Provisions",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ina M. Galston & Hans Smit eds., Matthew Bender, 1984.
- Farnsworth, E. Allan, "Problems of the Unification of Sales Law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mmon Law Countries", *Problems of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80.
- , "Interpretation of Contract",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 Flechtnner, Harry M., "Remedie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ales Convention: The Perspective from Article 2 of the U.C.C.", *The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8, 1995.
- Goldštajn, Aleksandar, "Usages of Trade and Other Autonomous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 to the UN(1980) Sales Conventi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brovnik Lectures, Petar Šarčević & Paul Volken eds., Oceana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6.
-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nd ed.,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Deventer, Boston, 1991.
- Uniform Commercial Code, 1990.
- UNCITRAL, *Commentary on the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U.N. Doc. A/CONF.97/5, reprinted in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Doc. A/CONF.97/19.
- UNCITR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Eleventh Session*, YB IX. U.N. Doc. A/33/77,



1978.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Presentation, <<http://www.agora.stm.it/unidroit/english/principles/prpres.htm>>

### ABSTRACT

As the CISG has been legislated for a new legal system playing roles as uniform rules which gover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 requires appropriate criterion of interpretation. The Convention distinguishes between two levels of interpretation. One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f the rules of contract law contained in the CISG itself, and the other the interpretation of specific statements or the conduct of the individual parties to a transaction.

|  |
|--|
| Key Words : Interpretation of CISG, Interpretation of Party's Statements<br>or Conduct |
|--|